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[별지 제60호의13서식] <신설 2014.3.14>

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납입증명서

① 성 명		② 생년월일	
③ 주 소			
④ 계좌번호		⑤ 가입일자	

( )년도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 현황

⑥ 월별	⑦ 납입일자	⑧ 납입금액	비 고	⑥ 월별	⑦ 납입일자	⑧ 납입금액	비 고
1				7			
2				8			
3				9			
4				10			
5				11			
6				12			
⑨ 연 간 합 계 액				사 용 목 적		소득공제 신청용	
⑩ 소득공제대상액 (⑨×40%)							

「조세특례제한법」 제91조의16제3항에 따라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공제 요건을 갖추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납입금액을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위와 같이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금액을 납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(저축취급기관장) (서명 또는 인)

작 성 방 법

1. 같은 월에 1회 이상 납입한 경우 "⑦ 납입일자"란에는 최종 납입일을 적습니다.
2. ⑧,⑨란은 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납입한 금액을 적으며,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"⑨ 연간합계액"이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
3. 해당 저축의 가입일로부터 10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당 저축으로부터 원금·이자·배당·주식 또는 수익증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출하거나 계약을 해지 또는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납입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. 다만, 해당 저축의 만기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
210㎜× 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 80g/㎡]